「외국인입국 및 거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322호 장관결정」

제1조

『1997년 제360호 장관결정에 따라 공포한 외국인입국 및 거주법 시행령』의 제33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44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

여행비자소지자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회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영토 입국을 허용하며 이 경우 매 방문 시 최대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영토에 체류할 수 있다.

제38조

방문입국허가

국적 및 체류국과 국외에 주재하는 영사관은 필요 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영토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문목적에 한하여 방문입국허가를 할 수 있다.

가) 합법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체류 중인 친족 또는 친구 방문목적

나) 공법인 또는 사법인 방문목적

제39조

방문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입국할 수 있다. 방문입국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) 장기방문입국허가의 경우 허가소지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갱신하지 못한다.

나) 단기방문입국허가의 경우 허가소지자는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갱신하지 못한다.

제40조

방문입국허가취득신청서는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첨부한 후 제출하며 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가- 입국목적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친족 또는 친구 방문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- 방문자는 보증인과 1촌 이내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어야 하며 차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2촌 이내의 친족을 방문할 수 있다.

2- 방문자가 친구인 때에는 보증인은 내국인이어야 한다.

3- 친족관계 또는 혼인관계나 방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임을 보증한다.

나- 외국인기혼녀가 GCC국가의 국민인 남편을 방문하는 때에는 남편의 국적국의 효력 있는 체류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.

다- 방문목적이 공법인 또는 사법인 방문인 때에는 관할국에 방문사유 및 목적을 기재한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소지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하며 금전적인 담보로 1,000디르함을 지급하고 이 금액은 출국시 반환

한다.

제44조

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30일 간 체류할 수 있으며 GCC국가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동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입국일부터 최대 60일 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GCC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2회에 걸쳐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

제2조

『1997년 제360호 장관결정에 따라 공포한 외국인입국 및 거주법 시행령』의 제44조의1, 제44조의2, 제44조의3, 제44조의4, 제44조의5, 제44조의6, 제44조의7, 제44조의8, 제44조의9 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제44조의1

연구목적의 입국허가

연구목적의 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44조의2

연구목적의 입국허가발급요건은 다음과 같다.

가- 보증인은 국내에서 허가 받은 대학교, 대학원,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.

나- 허가소지자는 건강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.

다- 허가소지자는 1,000디르함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출국 시 반환한다.

제44조의3

치료목적의 입국허가

치료목적의 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

제44조의4

치료목적의 입국허가발급요건은 다음과 같다.

가- 보증인은 국내 소재한 병원 중 1곳이어야 한다.

나- 공인된 의료진단서 제출

다- 허가소지자는 1,000디르함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출국 시 반환한다.

제44조의5

박람회, 행사 또는 회의참석목적의 입국허가

박람회, 행사 또는 회의참석목적의 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다.

제44조의6

박람회, 축제 또는 회의참석목적의 입국허가발급요건은 다음과 같다.

가- 박람회, 축제 또는 회의 개최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제출

나- 허가소지자는 1,000디르함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출국 시 반환한다.

제44조의7

관광목적의 입국허가

관광목적의 입국허가소지자는 허가발급일부터 2개월 간 1회에 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동기간 갱신이 가능하다.

제44조의8

관광목적의 입국허가발급요건은 다음과 같다.

가- 보증인은 국내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.

나- 여행사는 법인개설 시 7만5천디르함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여행사는 각 관광비자에 대하여 1,000디르함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증금은 차관결정에 따라 정한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부과한다.

다- 허가신청서는 도착일부터 최소 1주일 전 신청인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청인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신청인에 대한 여행일정표도 첨부하여야 하고 일정표에는 도

착일, 입국일, 국내 체류장소 및 방문목적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 차관 또는 그의 업무대행자의 동의를 얻어 전항에 명시한 수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라- 허가소지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.

제44조의9

예우비자(COURTESY VISA)

해외에 주재하는 대사 및 영사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및 기타 예우비자를 통하여 방문이 가능한 법인에 대한 방문비자를 허가하며 이 경우 보증인요건은 면제할 수 있다.

제3조

『외국인입국 및 거주법 시행령』 제43조의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어떠한 경우에도 허가소지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.

제4조

입국허가 및 비자에 대하여는 이 결정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다.

제5조

이 결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.

알파리끄 사이프 빈 자예드 알 나얀 내무부장관

2008.5.15.(이슬람력: 1429.5.10.)